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대표금융회사 현대캐피탈)

2. 조치일 : 2026. 1. 29.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9건, 개선사항 5건

※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내부통제정책·기준의 평가·점검 체계 강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이하 "그룹")은 그룹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의 세부사항을 매년 평가·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대차 그룹은 내규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하 "「현대차그룹 내부통제기준」") 제25조에서 대표금융회사는 소속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한 점검범위, 점검주기 등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현대차 그룹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그룹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그룹 내부통제기준」 제4조에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동 기준 제25조에서 대표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결과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금융회사에게 미비점 개선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그룹은 그룹의 내부통제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룹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매년 평가·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대차 그룹은 그룹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매년 1회 소속금융회사가 자체점검하고 대표금융회사가 이를 검토하고 있으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그룹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의 세부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부를 누락하여 점검하거나 일부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다만, 2025.6.12.「내부통제 세부정책 운영(안)」(이하 "「내부통제 세부정책」")을 제정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그룹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한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대표금융회사는 소속금융회사의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하였으나 검토결과에 대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으며, 검토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에게 이행토록 권고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음

아울러, 대표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대상·내용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점검 실시, 점검결과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등에서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점검 후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대표금융회사가 소속금융회사별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는 한편, 내부통제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평가·점검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시기 바람

(2) 위험관리협의회 운영 강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그룹은 이사회의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그룹 위험관리기구(이하 "그룹위험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현대차 그룹은 내규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하 "「현대차그룹 위험관리기준」") 제16조에 따라 영위하는 업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그룹위험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그룹위험관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대차 그룹은 그룹위험관리협의회를 총 6개 회사(4개 국내금융회사, 2개 해외금융회사)의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5명은 A사, 2명은 A사의 해외 현지법인(2개), 나머지 3명은 그 외 소속금융회사(3개) 각 1명으로 그룹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업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그룹위험관리협의회 구성은 A사 구성원이 전체 구성원의 50%(해외법인 고려 시 70%)를 차지하고 있어, 위험부담한도 배분 등의 업무 심의·의결 과정에서 소속금융회사들의 현황 및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A사 위주의 심의·의결이 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대차 그룹 위험관리 전담조직은 그룹위험관리협의회 의결 이후, 의결 결과를 「현대차그룹 위험관리기준」 적용 해외 소속금융회사들에 송부하여, 추가적인 질의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후통보 형식의 업무 절차는 의결과정에서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의견이 고려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그룹위험관리협의회가 소속금융회사들의 다양한 의견 및 이해관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룹위험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강화하시기 바람

(3) 위험관리기준 적용 제외 기준 관리 강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그룹은 그룹 수준에서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그룹 위험관리기준」 제3조 제3항에서 위험관리기준 적용 제외 대상 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 회사들은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 등 그룹 위험관리 관련 일부 사항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한편, 현대차 그룹은 그룹 內 신규 편입(신설법인 포함) 소속금융회사의 경우, 그룹 위험관리 차원에서 자본적정성 관리 및 보고·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부담한도 설정 등 위험관리 업무는 「현대차그룹 위험관리기준」 제3조 제3항에 따라 편입 이후 차년도말까지 수행하고 있지 않음

실제로 검사대상기간 중 그룹 內 일부 신규 편입법인(신설법인 포함)의 경우, 관리 실익(종업원, 자본, 자산규모) 조건을 크게 초과하여 그룹 차원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대차그룹 위험관리기준」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본적정성 관리 및 보고·공시 의무만을 이행하고, 이외의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그룹 위험관리기준」 적용 제외 대상 및 업무 등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룹 內 신규 편입법인(신설법인 포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실익을 고려하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4) 위험부담한도 소진율 관리 업무 강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그룹은 그룹 위험관리정책에 사업 영역, 거래 권역 등 분야별,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설정 및 자본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그룹 위험관리기준에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 결정의 절차 및 방법을 포함시켜야 함

이에 현대차 그룹은 내규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제5조, 「현대차그룹 위험관리기준」 제10조 및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위험부담한도 관리규정」에서 위험부담한도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위험부담한도 매뉴얼」을 통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함

또한,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위험부담한도 관리규정」 제10조에서 위험부담한도 소진율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대표금융회사가 소속금융회사의 위험부담한도 운영상황에 대해 점검·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분기 1회 이상 보고토록 규정하고 실제로 매 분기별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현황 보고'를 통해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다만,「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 위험부담한도 관리규정」<별첨>에서 위험부담한도 소진율별 조치사항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소진율별 위험부담한도 관리를 위한 조치가 그룹 內 활용 가능한 여유자본을 활용하는 '한도 재설정' 측면으로만 마련되어 있어 위험부담한도 관리 업무의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위험부담한도 관리에 있어서 여유자본의 활용만이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사항을 마련하는 등 위험관리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5) 위기관리체계 관리 업무 강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제10조 및 <별표 2>에서는 그룹 수준의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황단계 설정 및 단계별 조치 이행 등을 포함하여 그룹 수준의 위기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대차 그룹은「현대차그룹 위험관리기준」제13조 및「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기상황 대응 규정」제6조에서 위기관리체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그 상세 내용을「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기상황 대응체계 매뉴얼」을 통해 마련함

또한, 자본적정성 비율, 소속금융회사 위기선언 여부 및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활용해 위기판단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룹 위기상황을 총 3단계(주의 · 위험 · 비상)로 구분한 뒤, 각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함

다만, 그룹 수준의 위기관리체계는 그룹의 건전 경영 유도와 부실 예방을 위해 자본적정성 비율이 법령상 규제비율(100%)을 상회할 수 있도록 수립·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대차 그룹은 자본적정성 비율을 활용한 위기상황 판단 시 법령상 규제비율을 비상단계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자본적정성 규제비율 준수를 위한 그룹 차원의 위기상황 판단 및 대응능력의 실효성이 미흡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그룹의 건전 경영 유도와 부실 예방을 위해 법령상 규제비율(100%)을 상회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본적정성 비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체계 관리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6) 조기경보체계 운영 업무 강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0조 및 <별표 2>에서는 그룹 수준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금융회사가 위기 유형별로 또는 종합적인 위험에 대하여 위기유발 요인을 선정하여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고, 조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방안 및 업무절차 등을 포함하는 위기관리체계를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음

현대차 그룹은「현대차그룹 위험관리기준」 제13조 및「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기상황 대응 규정」 제5조에서 조기경보체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상세 업무 내용을「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기상황 대응체계 매뉴얼」을 통해 규정하였으며,

조기경보지표를 현대차 그룹, 금융시장, 실물경제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10개의 지표를 마련하고, 각 지표별로 발령기준을 2단계(Lv1, Lv2)로 설정하여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각 지표별 발령단계 및 수를 기준으로 국가별 조기경보 발령 기준(경계, 위기)을 마련하고, 국가별 조기경보 발령 수와 연동하여 현대차 그룹 차원의 조기경보 발령 기준(경계, 위기)을 마련하였으나, 조기경보발령 단계(경계, 위기)에 따른 대응방안 및 업무절차에서 국가별 위기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방안 및 업무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조기경보체계 운영 업무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국가별 위기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기경보발령에 따른 그룹 차원의 대응절차가 빠짐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

(7) 자본유지정책 수립 및 운영 업무 강화

① 자본적정성 목표 비율 산정의 합리성 제고

현대차 그룹은 매년 자본적정성 목표 비율을 산정하면서 필요자본에 완충자본(버퍼)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닌 가용자본비율을 전제로 역산하여 1차로 목표 비율을 정하고 유보자본과 예비자본 규모를 반영하여 최종 목표 비율을 확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목표 비율이 실제 위험 노출이나 자본적정성 분석보다는 외부 벤치마크(금융지주회사)와 단순 역산 식으로 산출되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설정 근거가 부족하며, 유보자본과 예비자본이 목표 비율 설정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반영되어 자본정책의 중요한 관리 수단인 완충자본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목표 비율을 규제 최소비율, 그룹의 위험성향 및 경영전략, 주요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출하고 이에 대한 근거와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하여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승인 절차에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본적정성 목표 비율 산정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

② 자본적정성 목표 비율 관리기준 강화

현대차 그룹은 2025년 자본적정성 관리기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목표 비율보다 높은 관리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나 최종 조치 기준이 규제 최소 수준(100%)에 맞춰져 있음

이로 인해 목표 비율과 관리기준의 체계가 불명확하고 국제적 관리 수준에 비해 보수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목표 비율은 현대차 그룹이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할 목표치로 정의하고 관리기준은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고 수준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조치 기준인 규제 최소비율 대비 추가 완충자본을 두어 규제 비율에 근접하기 전에 조치가 발동되도록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자본적정성 목표 비율 관리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

③ 위험유형별 자본 배분 체계 강화

현대차 그룹은 그룹의 자본유지정책 수립 시 소속금융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유형별 내부자본 배분, 한도 관리, 한도 초과 또는 초과 예상 시 대응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자본 배분은 주로 사업 영역·거래 권역·소속금융회사 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속금융회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바젤 기준 기반의 위험가중자산(RWA) 산정체계가 도입되지 않아 위험유형별 내부자본 배분 및 한도 관리가 충분히 구현되기 어려운 구조임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업무 특성상 신용·시장·운영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나 규제상 위험유형별 자본 산출 의무가 부재하여 자본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룹 차원의 정교한 위험관리가 미흡할 수 있으며, 경기침체나 손실 확대 시 자본적정성 훼손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내부관리 목적으로 위험유형별 자본 배분 기준(간이 산출방식)을 마련하고, 현재 자본 배분 체계에 위험유형별 보조 한도를 추가로 반영하여 위험 집중도를 완화하는 등 그룹 차원의 위험유형별 자본 배분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

(8) 소속금융회사 간 임원 인사교류 내부통제 강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그룹은 그룹 내부통제기준에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임원의 인사운영에 대한 점검·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별표 1>에서 그 점검 및 검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그룹 내부통제기준」 제23조 및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임원 인사교류 관리규정」에서 임원 인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임원인사교류 관리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업권에 속하는 소속금융회사 간 임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대상자의 겸직 또는 이직 후 업무가 대표이사, 주요업무 집행책임자,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인 경우에 한하여 인사교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검토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업무는 일반적으로는 금융회사 간 임원겸직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이므로 사전검토 대상 기준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이에 실제로도 일부 소속금융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겸직을 제외한 모든 겸직임원에 대한 인사교류 적정성 사전검토는 실시되지 아니함

또한, B사는 전자금융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와 동일한 여신전문금융업자로 분류하고 모회사로부터 이직한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겸직임원에 대한 임원 인사교류 적정성 사전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임원 겸직 위험에 대한 정기 점검도 누락하는 등 소속금융회사 간 임원 인사교류 점검 및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소속금융회사의 경우 임원 인사교류 적정성 사전검토 대상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임원 겸직 위험에 대한 정기 점검 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주의하는 등 소속금융회사 간 임원인사교류 내부통제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

(9)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위험전이 모니터링 강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서 그룹은 소속 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 위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그룹 수준의 위험을 적절하게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대차 그룹은 내규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집중·위험전이 관리규정」 제7조 제2항에서 대표금융회사는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 위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그룹 수준의 위험을 적절하게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조직은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위험전이 모니터링 현황을 그룹위험관리협의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조직은 분기별로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적·비재무적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이는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에 대한 변동 사항만을 관리하는 수준이며, 「공정거래법」 등 위반에 따른 제재 및 처벌 현황과 그룹 차원의 위험전이 분석 및 대응방안을 포함한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위험전이 모니터링 현황은 연 1회만 그룹위험관리협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현대차 그룹은 소속비금융회사인 C사가 지배구조 상단에서 소속금융회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로서, 소속금융회사들이 주로 대주주 차량 판매를 위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어 위험전이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며, 최근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정책의 변화 등으로 그룹 전체의 수익 감소 등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위험전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분기별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적·비재무적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시, 「공정거래법」 등 위반에 따른 제재 및 처벌 현황과 그룹 차원의 위험전이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동 결과를 그룹위험관리협의회에 보고하는 등 위험전이 관리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내부통제기준 적용 소속금융회사 범위 관리 업무 개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8조에서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회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그룹 내부통제기준」 제3조에서 기준 적용 소속금융회사 범위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제2조 제2항에서 내부통제기준 적용 소속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부통제기준 적용대상으로 확정 후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현대차그룹 내부통제기준」 제3조에서 그룹 내부통제기준 적용대상으로 확정된 신규 편입법인 등에 대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를 제외한 동 기준 적용을 차년도말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그룹 내부통제기준」 적용 소속금융회사 범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성을 매년 재검토하는 규정은 없음

또한, 신규 편입법인 등이 「현대차그룹 내부통제기준」 적용 소속금융회사 범위의 기준을 충족함에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기 전까지 동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며, 그룹 내부통제기준 적용대상 신규 편입법인 등의 경우 이사회 심의·의결로 확정된 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를 제외한 「현대차그룹 내부통제기준」 적용을 차년도말까지 유예하게 하고 있는 등 일부의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기간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그룹 내부통제기준 적용 소속금융회사 범위의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을 매년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규 편입법인 등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관리 실익을 고려하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그룹 차원의 위험 인식·측정 업무 개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그룹 위험관리정책 수립 시 그룹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그룹 위험관리기준 수립 시 그룹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대차 그룹은 내규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제4조에서 대표금융회사가 대표금융회사 및 소속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그룹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감시를 위해 각 위험을 유형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측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현대차그룹 위험관리기준」 제9조에서 그룹이 인식하고 측정해야 할 위험의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내규상 그룹 차원에서 인식해야 할 중요 위험의 유형을 구분하고는 있으나, 그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등 관련 세부 업무절차가 부재하며,

소속금융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추진 시 그룹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그룹 內 신규 자산운용사를 설립함에 따라 향후 통합자기자본 대비 공동투자 비중 증가 등 그룹 차원에서 인식해야 할 위험의 점증이 예상됨에도 이와 관련한 위험 점검 시 사업추진 계획 등 경영계획에 관한 내용 위주로 검토가 이루어졌기에, 신사업 진출과 관련한 그룹 차원의 위험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측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에 대해 위험 유형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위험관리정책·기준 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점검 업무 개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그룹이 위험관리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고, 위험관리정책 및 기준의 추진 및 운영 상황을 매년 평가·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표금융회사는 매년 세부정책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한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위험관리정책 및 기준의 운영 상황을 평가·점검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나,

현대차 그룹은 2022년 및 2023년도에 위험관리정책 및 기준의 추진 및 운영 상황 평가·점검을 미실시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관리정책 및 기준의 추진 및 운영 상황 평가·점검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4) 자본적정성 비율 검증·관리 업무 개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그룹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며, 그룹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함

이에 현대차 그룹은 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및 분석 업무 수행 시 소속금융회사 감사보고서 또는 소속금융회사의 CFO가 승인한 재무제표와 같은 문서를 활용하여 소속금융회사가 제출한 재무정보를 대조 및 확인하고 있으나,

자본적정성 비율 검증 시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되어 있는 요약 재무현황을 바탕으로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 소속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에 대한 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검증 업무를 누락하는 사례도 확인됨

한편, 현대차 그룹은 소속금융회사가 재무제표 또는 업무보고서 등을 수정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대표금융회사에 통보하는 업무절차가 부재하여 소속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비율 변경 내용이 그룹 통합 수준에서의 자본적정성 비율 산출 시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모든 소속금융회사의 분기별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검증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소속금융회사의 재무정보 및 업무보고서 변경 내용 등을 대표금융회사에 통보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5) 위험집중 관련 위험관리 업무 개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그룹은 위험집중이 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감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대차 그룹은「현대차그룹 위험관리기준」 제23조에서 상기 내용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집중·위험전이 관리 규정」 및「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집중·위험전이 관리 매뉴얼」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위험집중 관리 측면에서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분야 등이 특정 대상이나 특정 분야 등에 편중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위험집중이 발생 가능한 거래 유형(신용공여 및 출자, 공동투자 등)을 구분하고, 각 거래 유형 내에서 차주(피투자자)별 · 업종별 · 국가별로 구분하여 거래한도를 설정 ·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대차 그룹은 공동투자 한도를 관리함에 있어 차주(피투자자)별 · 업종별 · 국가별로 거래한도를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 익스포져 기준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위험집중과 관련한 위험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대차 그룹은「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집중·위험전이 관리규정」 제4조에서 공동투자가 '그룹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검토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그룹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음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최근 그룹 內 신규 자산운용사 설립으로 인해 향후 위험집중과 관련된 위험의 점증(공동투자 증가 등)이 예상되는 만큼, 위험집중 관리를 위한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